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

발의연월일: 2020. 6. 4.

발 의 자:유의동・金炳旭・김 웅

한기호 · 김희국 · 권은희

조해진 · 성일종 · 하태경

이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현행법 제9조에서는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세입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수금 등으로하고 있음.

국방부는 당초 2024년까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반환 미군기지 매각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는 등 공 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이 지연되어 평택시 지원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

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22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22년</u>	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	다.